

17. 포상 및 표창에 관한 내규(2009.4.15.신설)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직원인사규정 45조(포상) 및 교원인사규정에 제33조(포상 및 포상상신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8.6.22 자구수정)

제2조(포상 및 표창대상) 포상 및 표창대상은 본교의 교원, 직원으로 한다.

제3조(포상 및 표창의 사유) 표창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(2018.6.22 추가삽입)

1. 공로상 및 모범상

- 가. 헌신적인 봉사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업적이 현저한 경우
- 나. 근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
- 다. 재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로가 뚜렷한 경우
- 라.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학교발전에 이바지한 경우

2. 근속상

- 가. 근속상은 10년, 20년, 30년, 40년 근속한 정규 교직원에게 수여한다.
- 나. 근속기간 산출은 초임년월일부터 계산하여 매년 학기말까지로 한다.
- 다. 공상으로 인한 휴직 이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.

3. 강의 우수교원 포상 :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

4. 연구 우수교원 포상 : 교원업적평가 결과 중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원

제4조(포상 및 표창의 추천) ① 공로상 대상자는 교내 구성원 누구나 공적조서(추천서)를 첨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. (2018.6.22 추가삽입)

② 강의 우수교원 포상은 강의평가 결과를 연구 우수교원 포상은 교원업적평가 결과 중 연구업적 총점 점수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적조서는 생략한다.

③ 근속포상은 인사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근속연수 산정표를 제출하고 공적조서는 생략한다.

④ 직원 모범상은 해당 규정에 의한다.

제5조(포상결정) ① 공적조서 심의 의결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공적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 (2018.6.22 자구수정)

②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,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정례적인 근속포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. (2018.6.22 내용추가)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(2018.6.22 내용추가)

제6조(공적심사) ① 포상 및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총장에게 보고 한다. (2018.6.22 자구수정)

② 공적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.

- 1. 공적내용이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
- 2. 공적내용이 본교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
- 3. 포상 및 표창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
- 4. 근무상황(근무연수, 직급, 연령, 실무분야 등)
- 5.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포상 및 표창) 총장은 본 내규 제6조의 심의 의결사항을 검토하여 포상 및 표창을 결정할 수 있고 상신할 수 있다. (2018.6.22 자구수정)

제8조(이중표창의 금지) 포상 및 표창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

(2018.6.22 차구수정)

제9조(업무주관) 포상에 관한 업무는 교원은 교학처, 직원은 사무처에서 관장한다. (2018.6.22 조 신설)

부 칙

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규정 시행일 이전 지급한 포상 및 표창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한다.

